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013 ~ 59

| 제출일자 | 2013. 6. 28.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거창군수 |

1. 제안이유

○ 「수도법」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돗물 수질검사기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개정된「수도법」에 맞추어 수돗물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반영함

- (1) 기능 : 수돗물 정기검사 및 공표,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, 수돗물 정기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(안 제2조)
- (2) 위원 자격: 수도관련 업무담당 소속공무원, 수도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(안 제3조)

나. 수돗물 수질검사기관 등 수질검사 관련 조항 정비함(안 제8조)

- (1) 수도사업소 ⇒ 상하수도사업소
- (2)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⇒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함

(안 제1조, 제3조, 제6조, 제9조,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수도법」제30조, 「수도법 시행령」제49조의2

나. 예산조치 : 2013년도 예산 3,360천원 반영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3. 4. 5. ~ 4. 24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수도법」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"를 "「수도법」제30조에 따라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"로, "운영에 관하여"를 "운영에"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능)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
- 2. 군수(수도사업자)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
- 3.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

제3조 제4항 중 "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, 서기는 수질업무 담당주사"를 "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주사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위촉된"을 "새로 위촉된"으로, "잔여"를 "남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이 60%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,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제6조 중 "각호"를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"때"를 "경우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질병이나 기타"를 "질병 등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8조제2항 본문 중 "수도사업소"를 "상하수도사업소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"을 "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"으로 한다.

제9조 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, "2가지"를 "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거창군홈페이지"를 "군 홈페이지"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10조 제목 "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명기사항"을 "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포함 사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"각호"를 "각 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 "관리책임자를 실명으로 명기한다."를 "관리책임자의 실명을 표기한다."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구성위원으로 본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제19 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제30조 |
| 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수돗물평 | 에 따라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|
| 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의 설치 | |
|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| 운영에 |
| 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|
| 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 | 제2조(기능)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|
| 무를 수행한다. |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 |
| 1. 상수원·정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| 의 업무를 수행한다. |
| 및 결과 공표 | 1.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|
| 2. 상수원·정수의 질에 대한 문제점 및 | 2. 군수(수도사업자)에 대한 수질 관리 |
| 수질향상 자문과 수도시설의 운영·관리 |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|
| 에 관한 자문 | 3.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 |
| 3. 상수원수 오염과 관련된 제반 감시 활동 | <u>의 선정</u> |
| 4. 기타 상수원·정수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| |
| | |
|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 |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|
| | 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|
| 위원으로 구성한다. | 특정 성이 60%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 |
| | 여야 한다. |
| ② (생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위원은 군의원, 언론인, 학계, 환경 |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|
| 관련단체, 수도사용자 중에서 군수가 | 소속 공무원,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|
| 위촉한다. |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|
| |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|
|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 | 4 |
| 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 | |
| 되,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 |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주사 |
| <u>고, 서기는 수질업무 담당주사</u> 로 한다. | |
|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| ⑤ |
|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| |
|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 | 남은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----------|
| 제6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<u>각호</u>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<u>때</u> 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<u>질병이나 기타</u>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2. (생 략) 3. <u>기타</u>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 당하다고 인정될 때 | |
| 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측정이 불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| 상하수도사 업소 |
| 2. 경상남도 내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신문 3. <u>거창군홈페이지</u> 및 읍면 게시판 4. <u>기타</u> 군민이 알 수 있는 적당한 방법 등 제10조(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명기사항)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<u>각호</u> 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군민들이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등 | |
| 에 대한 의문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<u>관리책임자를 실명으로 명기한다.</u> 2. ~ 3. (생 략) |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1조(활동경비 등) 위원회 운영에 따 | 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|
| 른 운영경비, 위원회 참석수당, 수질검 |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|
| 사비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| 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|
| <u>수 있다.</u> |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
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○「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」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

4. 작성자

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찬 복